###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필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454 발의연월일: 2021. 3. 2.

발 의 자:정필모·김성주·박광온

변재일 · 신영대 · 윤영찬

이병훈 · 이수진 · 이용빈

이탄희 • 이학영 • 한준호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(이하 "연구기관"이라 한다)을 지원·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(이하 "연구회"라 한다)를 설립하도록 하고있음.

그런데 연구회의 사업 중 하나로서 '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'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자체의 경영 내용에 대한 평 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.

현실에서는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든 지주회사가 존재하고, 해당 지주회사의 자본금은 결국 국가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재원이며, 연구기관이 해당 지주회사의 주주라는 점을 고려할 때, 연구회

가 해당 지주회사의 경영 내용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연구회가 평가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경영 내용에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, 이하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기관의 경영 내용에 대하여서도 해당 내용을 똑같이 적용시키려는 것임(안 제21조제3호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3호 중 "경영 내용"을 "경영 내용(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으로 한다.

제2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연구회가 제21조제3호에 따라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 내용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방법과 내용,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사업) 연구회는 제1조의	제21조(사업)
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	
각 호의 사업을 한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<u>경</u>	3 <u>경</u>
<u>영 내용</u> 에 대한 평가	영 내용(연구기관이 출자한
	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
	<u>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
4. ~ 8. (생 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
제28조(연구기관의 평가) ① · ②	제28조(연구기관의 평가) ① · 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③ 연구회가 제21조제3호에 따
	라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
	경영 내용을 평가하려는 경우에
	는 평가의 방법과 내용, 대상 및
	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
	사회의 의결을 거친다.
③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